

충청북도 사무의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1994. 3. 22.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4년 3월 16일

· 회부일자 : 1994년 3월 16일

다. 상정일자 : 제 100 회 임시회

·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 3. 22.)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내무국장 유의재)

가. 제안이유

- 권한의 합리적인 배분과 업무추진의 일원화로 자치단체의 생산성을
· 높여 행정의 간소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보건과 소관의 의료보수인가
- 축산과 소관의 동물약사감시와 내수면어업면허 등 2개과 3건의
도지사 관장 사무를 시장, 군수, 출장소장에게 위임

3. 전문위원 검토요지

(전문위원 윤 태 무)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이는 기존의 사무위임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지방행정을 구현하고자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
군수, 출장소장에게 합리적으로 적정 배분하여 위임 처리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신속한 추진과 아울러 일원화 및 능률화를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보건과 소관의 의료보수인가 사무와 축산과 소관의 동물
약사감시 업무 및 내수면어업면허 업무 등 2개과 3건의 조례 내용을 신설
개정 하려는 것으로서 본개정조례안은 행정의 간소화와 능률화를 도모하므
로써 지방자치 단체의 원활한 행정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승인하여 줌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수정안 요지 : 개정조례안 “별표1”의 위임사무중 축산과 소관
위임사무명인 “동물약사감시” 사무삭제

7. 심사결과 : 수정동의안 7인중 4인 찬성으로 개정조례안 “별표1”
의 위임사무중 축산과 소관의 위임사무인 “동물약사
감시” 업무에 대하여 수입기관의 수입능력의 부재로
인하여 권한 만의 위임은 불합리 한 바 수입능력이
갖추어 질 때 까지 위임을 보류하기로 수정의결하고
기타의 부분은 도원안대로 의결

8.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9. 기타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 조문 대비표
-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보건과 소관 제61호 다음에 제6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보건과	62	의료보수 인가	의료법 제37조

(별표1)중 축산과 소관 제54조 다음에 제5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축산과	55	내수면어업면허	내수면개발촉진법 제7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 문 대 비 표

현				개				수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부 명	근 거 법 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부 명	근 거 법 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부 명	근 거 법 령
보건과	1-61	(생략)		보건과	1-61	(현행과 같음)	의료보호법 제37조	보건과	1-61	(현행과 같음)	의료보호법 제37조
		(신설)	62		의료보호인기	62			의료보호인기		
	축산과	1-38	(생략)		축산과	1-38	(현행과 같음)	동물용의약품 허가규칙 제29조 제2항	축산과	1-54	(현행과 같음)
(신설)		39	동물약사감시	55		내수면어업면허					
39- 54		(생략)	40- 55	현행39-54호와 같음		56	내수면어업면허				
		(신설)			56	내수면어업면허	내수면개발촉 진법 제7조				